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28
------------	------

2025년 2월 28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광향기 의원 외 13명

나. 제안일자 : 2025년 2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2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5년 2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광향기 의원)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추

가된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이는, 현행 조례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 정비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함(안 제3조제4호의2, 안 제3조제5호의2)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안 별표1의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02.11. ~ 2025.02.15.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추가된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 정비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

1) 물류정책과-2199('25.2.17.) 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의결제출 요망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개정사항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안전 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²⁾에서는 시·도지사가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³⁾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14년 1월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법 제60조의2 제1항제1의3호 및 제2의2호4) 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장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을 150,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1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원)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3조제1호)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제3조제2호 및 제3호)	150,000	
3.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제3조제4호 및 제5호)	200,000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제3조제6호 및 제7호)	150,000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제3조제8호)	200,000	
6.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제3조제9호)	200,000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1의3. 제11조제20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장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적재불량이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단속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4년 기준 '화물 위법행위 관련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불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및 실질적 피해가 없는 일반 시민이 적발·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평균 1~2건에 불과하고 예산 집행율도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2 :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건, 천원)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800	2	200	0	0	4	400	2	200	0	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향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2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곽향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남궁역, 박성연, 송경택, 유만희, 이상욱, 이원형, 이효원, 이희원, 최민규, 홍국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추가된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이는, 현행 조례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 정비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안전운행과 도로 운전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함(안 제3조제4호의2, 안 제3조제5호의2)
-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안 별표 1의 7)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위반”을 “위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반”을 “위반 1”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2: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5의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2: 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별표 1의 6.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란 다음에 7.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7.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제3조제4의2호 및 제5의2호)</p>	<p>150,000</p>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4호의2·제5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
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
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

<신 설>

6. ~ 9. (생 략)

운송사업자

5. ----- 위반 1:

5의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2: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
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
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6. ~ 9.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안 별표1의 7)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부서(교통실)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화물 위법행위 관련 포상금	1,0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1] 2025년 화물 위법행위 관련 포상금 사업설명서

□ 사업목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5.1.~12.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행위 신고, 고발인
- 규 모 :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
- 추진방법
 - 신고포상금 : 자치구로 위반행위 신고 후 자치구 처분 시 자치구에서 시로 포상금 지급 신청
- 사업의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